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가. 공공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직제의 신설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른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사무소 신설

1) 사회복지사무소는 구본청 기구로 설치하여 사회산업국 다음에 두며, 소장의 직급과 사무소의 세부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2) 사회복지사무소에는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를 두고 그 존속기한은 2006. 6. 30까지로 함(안 제6조의2 및 부칙 제2조)

3) 사회복지사무소장 분장사무(안 제6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업무에 관한사항

○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여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내실화에 관한 사항

○ 민간자원의 개발·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과 폐지

1)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간중에는 사회산업국의 보조기관중 "사회복지과"를 삭제하고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를 둠(안 제6조제1항)

2) 사회산업국의 분장사무중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과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분장사무는 삭제함 (안 제6조제2항)

다. 기획감사실 신설업무

혁신분권에 관한 업무 명시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4. 7. 1부로 개소되는 사회복지사업소 신설에 대비한 직제의 신설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 그 주요 내용이 주요골자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등을 검토해 본 결과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됨.